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국제개발협력”을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u>	<u>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u> <u><삭 제></u>

	<u>할 수 있다.</u>	
--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58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이기현 · 김문수 · 허영
김윤 · 강준현 · 최민희
이주희 · 장철민 · 김교홍
홍기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의2제2항 삭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u>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u> <u>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u> <u>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u> <u>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u> <u>협력(「국제개발협력기본법」</u> <u>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u> <u>력을 말한다)을 추진하여야 한</u> <u>다.</u>